

에스디엔(주) 제7회 무보증 전환사채 청약안내

- **청 약 약 일** : 2014년 3월 3일 ~ 3월 4일 (2일간)
- **발행일** : 2014년 3월 6일
- **만 기 일** : 2014년 3월 6일
- **상장예정일** : 2014년 3월 6일
- **청약취급처** : 엘이지투자증권(주), 한양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

- **모 집 총 액** : 5,000,000,000원
- **사채의 단위** : 표면금리 4.0%, 만기보상수익률 8.0%
- **청약인 위** : 최저 청약금액 100만원
- **전 환 가 액** : 1,048원
- **청 약 자 격** : 실명의 개인 및 법인

에스디엔(주) 제7회 무보증 전환사채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청약취급처에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1 상 호 : 에스디엔 주식회사
- 2 사 채 의 명 칭 : 에스디엔(주) 제7회 무보증 이면 무보증 전환사채
- 3 사 채 의 종 류 : 무보증 이면 무보증 전환사채
- 4 사 채 의 발행총액 : 5,000,000,000원
- 5 사 채 의 발행가격 : 각 사채의 표면금리의 100%
- 6 사 채 의 만 기 일 : 2017년 3월 6일
- 7 사 채 의 이 율 : 표면금리 4.0%, 만기보상수익률 8.0% (3개월 복리)
- 8 사 채 의 권 준 보 : 본 사채의 경우, 공시서류에 의거 등록발행하여, 실제거래를 발행하지 않으며 등록필요로 없음함.
- 9 사 채 의 상환방법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7년 3월 6일에 원금의 113.4120%로 일시상환하며 원금만은 정산한다. 다만, 상환일이 은행의 휴일일인 때에는 다음 영업일을 상환일로 하고, 상환일이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10 원리금납입대상 : 한국인인정형 이면지점
- 11 사채권리의 조기행사권(Put Option)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의 이자지급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의 이자지급일에 "본 사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의 휴일일인 때에는 다음 영업일을 상환일로 하고, 상환일이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1) 상환일 : 각 권금금액의 100%
 - (2) 청구금액 : 2015.3.31 104.1216%, 2015년 6월 6일 105.2040%, 2015년 9월 6일 106.3098%, 2015년 12월 6일 107.4342%, 2016년 3월 6일 108.5829%, 2016년 6월 6일 109.7546%, 2016년 9월 6일 110.9497%, 2016년 12월 6일 112.1687%
- 12 청구 및 지급 장소 : ① 청구장소 - 발행사채의 본점
 ② 지급장소 - 한양증권(주) 마지점
- 13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 각 조기상환일 전 100일(부담)부터 조기상환일 전 30일(부담)까지의 기간에 발행사의 본점에 서면통지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 14 지급예정일 : 각 조기상환일
 2015년 3월 6일, 2015년 6월 6일, 2015년 9월 6일, 2015년 12월 6일, 2016년 3월 6일, 2016년 6월 6일, 2016년 9월 6일, 2016년 12월 6일

- 12 전환에 관한 사항
 - 1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에스디엔 주식회사 가명식 보통주식
 - 2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의 발행가격의 체계는 본사채의 발행가격인 509원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본 사채"는 각 청약자에게 개별 배정되며, 전환청구시 소수점 이하의 단수준에 대해서 배정하지 않고 이발생금액으로 각각 배정된 전환사채의 전환청구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총합계액은 본사채의 발행금액인 509원임을 미달할 수 없다.
 - 3 전환율 : 각 사채 권금액(2 이상의 사채권 또는 등록필요로 전환 청구시에는 그 권금 금액)에 한시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 주 단위의 단수준은 그 단수준에 상응하는 금액을 전환주식의 교부시 명세서(사내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며, 위 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면 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할 수 없다.
 - 4 전환가격 : 1,048원 (환전)
 - 5 전환가격의 조정 :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전환가격을 조정하며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전환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이전에 발행사가 이대 (주) 또는 (주)의 발행 당시 사기행위에서 사기 혐의 중대한 발행 및 공시사항 관련 규정 제 182조에 따라 기조준자를 의한다)를 취하여는 발행가격으로 (가) 유증자, 주배금, 준금주의 자본적입 등으로 상환을 발행하거나, (나)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여된 회사의 주식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유증권을 발행하며 그 행사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행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호에서 "전환가격"의 조정은 (가)의 경우 유증자, 주배금, 준금주의 자본적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 하며, (의) 경우 회사의 발행일 한다.

- 3 조항 후 전환가격 = 조정된 전환가격 X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X 1주당발행가격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일 또는 신주인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에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유증 발행가격"은 주신행할 무상증자, 주배금 지급 등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의 산식에 다른 조항 후 전환가격의 권리와 미만을 정산한다.
 - ①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 청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 되었다면 전환사채를 보유한 자가 갚을 수 있었던 주식을 상환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을 이성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기준일이다.
 - ②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 후 그리고 그 후 매 3개월마다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전환가격 조정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투본주의 가액 "가중순평균주가" 1주일 "가중순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순평균주가"를 산출한 평균 가액과 최근일의 "가중순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인 "발행회사"의 투본주의 가액 또는 낮은 가액으로 조정하며,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도는 발행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합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된 경우에도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 ③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격의 체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갂자, 주식분할 등 주식사기 상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정발행일만큼 상환하여 병합된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갂자, 주식분할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준일로 하여 1개월 가중순평균주가, 1주일 가중순평균주가와 최근일 가중순평균주가를 산출평균으로 하고, 최근일(기준일) 가중순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인 "상환가격"이 액면가격 미만 이면서 기준일 전일 전환가격을 액면가격으로 이미 조정된 경우에도 조정 후 전환가격을 상환가격을 기준으로 갂자, 주식분할 등으로 인한 조정발행일만큼 상환 조정된 가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⑤ 위 항목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 후 전환가격 조 호기간이 미만 금액은 정산하며, 조정 후 전환 가격의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액면가금액으로 한다.
 - ⑥ 전환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사채발행일 이후 1개월 부터는 날(2014년 4월 6일)부터 만기 1개월 전(2017년 2월 6일)까지이다.
 - 7 전환청구장소 :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 8 기타사항
 - 1) 전환청구 절차 및 방법 : 사채권 또는 등록기관으로부터 확인서 확인을 받은 등록목록 및 소정의 전환청구서 2함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발행회사"의 명의로 채권 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전환청구)를 받은 장소에 제출하여 청탁한다.
 - 2) 전환청구의 효력발생시 : 전환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서 해당등록목록 및 전환청구서를 제출한 때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 3)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정 금액 및 이자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은 전환청구일 속한 영업일도의 직전 영업일도 말에 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전환일이 이자지급일이 이전인 경우 직전 이자지급일까지 이후 발행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4) 전환청구로 발행되는 주권의 교부방법 : "발행회사"는 명세서(사내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및 원하여 전환권 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을 원금으로 한다. 해당 청구서 제출일 및 신주인수권과 납입일로부터 17일 이내(단)에 부여하는 상환한다. 단, 원금에서 배정된 기간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와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의 협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 14 청약 위 취 급 처 : 엘이지투자증권(주) 및 한양증권(주)의 본·지점(이하 "인수단")
- 15 청약 및 배정방법
 - 1)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날인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서 청약한다.
 - 2)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인 개 조치를 통하여 청약을 허가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 3) 각 청약자의 청약 시 각 청약자별로 다중청약은 가능하다. 한 개의 청약처에서 이중 청약은 불가능하며, 전환사채가 다른 전환사채가 다른 전환사채가 다른 전환사채의 한 개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하다.
 - 4) 청약자의 청약내역에 대하여는 청약당일의 영업개시시간 이후 16시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여 확정되도록 한다.
 - 5)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호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 및 면제대상 제외)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 6) 교부방법 : 각 "인수단"의 본·지점
 - 7) 교부방법 : 각 "인수단"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본된 문서의 방법 또는 엘이지투자증권의 홈페이지(www.인수단)의 HTS-Home Trading System을 통한 전자문서로 방법으로 한다.
 - 8) 교부일시 : 2014년 3월 3일 ~ 4일 (2영업일)
 - 9) 청약내역 : 본 사채의 최초 청약당일은 100만원으로 하며, 100만원 이상은 100만원 단위로 한다. 다만 투자자의 총 청약당일은 500만원으로 한다.
 - 10) 청약증거금 : 청약서 발행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청약증거금은 2014년 3월 6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액으로 대체 출납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11) 배정방법
 - 1) 배정수령 계산시에는 인수단의 "청약금액"(인수단의 각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 받은 청약금액을 의미하며, 인수단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한 청약금액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인수단의 총 청약금액(인수단 각각의 "청약금액"을 합산한 총합을 말한다)을 본 사채의 권면총액으로 나눈 후 소수점 이하를 버리고 반올림한 정수비율로, 인수단의 각 청약처에 배정(통합배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 2) 인수단의 총 청약금액"이 본 사채의 권면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인수단의 각 청약처에게 5:16:16을 원칙으로 안분하여, 잔여금액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물량은 "대표 청약처"가 할의적으로 판단하여 인수한다.
 - 12) 청약 미달이 발생할 경우 그 청약금액에 배정되고, 미달한 금액은 "인수계약서"에 따라 "인수단"이 각자 자기에게로 인수한다.
 - 13) 배정내역은 10만원으로 한다.
 - 14) 배정내역 비교 고고 : 일반공모 청약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처내에 대한 전환사채 배정금액은 2014년 3월 5일 "인수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길음한다.
 - 인 회 일 : 2014년 3월 5일
 - 15) 사채의 납입은행 : 한국인인정형 마지점
 - 16) 사채의 발행일 : 2014년 3월 6일
 - 17) 기 타 사 항
 - 1) 본 사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ss.or.kr)에 공시된 에스디엔(주)의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또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는 에스디엔(주)의 사외보고서, 감사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등 기타 장외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 되어 있으나, 투자회사 결정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3) 본 사채에 대한 투자자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호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 및 면제대상 제외)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 받아야 한다.

본 사채 모집을 위한 증권선정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유효성확인 절차가 당해 신고서의 기재 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거나 증권회 자체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닙니다.

발행행사
에스디엔 주식회사
 ■ 주 소 : 서울시 광진구 구로동 한류로56길 85
 ■ 문의처 : 02-446-6691

대표주관회사
LIG 투자증권
 ■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5
 ■ 문의처 : 1544-7600

인수사
한양증권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7길 7
 ■ 문의처 : 02-3770-5000, 1588-2145